독일, AZO규제 "불투명"

의류연합회 반발 … 검사방법 문제로 연기 불가피

독일이 아조염료로 가공된 제품에 대한 규제를 앞두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국내 관련기업들도 대책마련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독일은 94년 7월 15일 연방의회에서 식품·일용품법 2차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인체에 직·간접 접촉성 일용품인 의류, 직물, 침구류, 피혁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유독성 화학물질로 판정된 20가지 아민에서 추출되는 아조계 염료로 가공된 제품을 95년 1월1일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95년 7월1부터 유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독일의 의류바이어인 Steilmann, Otto, Quelle, C&A 등은 94년7월 이후 이 사실을 국내 의류업계에 통보해 왔다.
그러나 중저가 의류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독일의 의류협회는 개발도상국 공급업자들이 94년 말까지 납기를 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후진공업국들이 염료를 대체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독일정부에 6개월 연기신청을 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독일정부는 타당성을 인정하고 94년 12월23일 식품·일용품법 제5조 1항에서 6항을 개정하여 수입금지 및 유통금지 기한을 각각 6개월씩 연기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염료 및 염색기업들도 이에 대응한 다양한 대처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검사방법에 문제가 발생해 또다시 연기될 상황이 발생하자 국내기업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산업연합회 경쟁력개발센타에 따르면 최근 독일 보건성은 샘플의 검사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인정해 표준검증검사 절차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표준검증검사 절차를 마련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요돼 또다시 법집행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일의 이번 조치에 대해 EU내에서도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이번 규정을 EU규정으로 할 것을 EU집행부에 문서로 제출했으나 프랑스는 수입금지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저널 1995/5/1>